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688

발의연월일: 2024. 10. 14.

발 의 자:서명옥・김미애・김 건

박정하・배준영・박준태

강선영 • 진종오 • 고동진

김용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초로 마약류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 성분이 대거 검출된 바 있음.

작년 6월 현행법이 개정되어 직접구매 해외식품에 대한 검사, 실태조사 등에 대한 근거조항이 마련되었으나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임.

이에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시하고,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제25

조의4, 안 제25조의5).

법률 제 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정보를인터넷 홈페이지에 연 1회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25조의4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의5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혀 했 개 정 아 제25조의2(직접구매 해외식품등 제25조의2(직접구매 해외식품등 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① 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 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 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 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 외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 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률」 상의 마약류 원료・성분 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 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 지에 연 1회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의4(직접구매 해외식품등 제25조의4(직접구매 해외식품등 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 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 보 제공)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보 제공) ① -----장은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 된 원료·성분이 포함될 가능 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③ (생 략)

제25조의5(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직접구매해외식품등 구매·사용실태, 위해정보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u>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u>
한 법률」 상의 마약류 원료・
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해서
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5(직접구매 해외식품등
에 대한 실태조사) ①
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률」 상의 마약류 원료・성분
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
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